

-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-

규칙 심사보고서

○ 일 시 : 2022. 11. 4.(금) 10:00

○ 장 소 : 본회의장

○ 안 건

-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- 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

의회 운영위원회

(위원장 유재호)

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. 10.

나. 발 의 자 : 김영수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22. 10. 28.

라. 상정일자 :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2년 10월 28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영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의회 소속 지방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하고, 임기제공무원 연장심사통지를 근무기간 만료일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개정하여 인사 운영 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임기제공무원 최초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 (안 제28조제1항)
- 임기제공무원 연장심사통지에 관한 사항 (안 제28조제4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규칙안은 임기제공무원의 최초 근무기간 및 연장심사통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회 인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화성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2. 10.

나. 발 의 자 : 김영수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22. 10. 28.

라. 상정일자 : 제216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2년 10월 28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김영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의 허가권자를 의장으로 하고,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등 국외출장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골자

-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제1항)
-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 (안 제11조~제12조)
- 기타 자구 정정에 관한 사항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허가권자를 명확히 하고 그 외 관련 절차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